

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7. 2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5월 9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1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4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7. 2) 상정 · 수정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)

- 가. 제정이유
 - 대한민국의 문화 및 관광중심인 종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 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주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국 명칭 변경
 - 관광활성화 전담기구인 관광과 신설
 -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 통합
 - 업무의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부서간의 소속 국 이동
 - 방재업무 강화를 위한 부서재편
 - 기구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다른 조례에 있는 명칭 등은 부칙으로 수정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- 이 종 환 위원회 수정안 동의

6. 修 正 案 의 要 旨

○ 수정이유

기구 개편에 의하여 기존의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던 생활체육 업무를 신설 되는 문화과에서 추진하게 되므로 주민들이 부서의 명칭을 보고 추진하는 업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“문화과”에서 “문화체육과”로 수정함.

○ 수정안 본문

안 제4조제1항, 부칙 제2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6항중 “문화과”를 각각 “문화체육과”로 한다.

7. 審 査 結 果 : 수정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, 부칙 제2조제2항, 부칙 제2조제6항중 “문화과”를 각각 “문화체육과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[illegible]